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3
----------	------

제출연월일 : 2026. 1. .
제출자 : 하남시장

1. 제안이유

- 주경기장과 보조구장의 축구장은 동일한 규모의 인조잔디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용자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용료 조정이 필요함
- 신규 체육시설인 스크린파크골프장의 도입에 따라, 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주경기장 축구장의 사용료 조정

- 1) 주경기장 축구장과 보조구장 축구장은 동일한 규모의 인조잔디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경기장 축구장의 사용료가 보조구장에 비해 약 2배로 책정되어 있음
- 2) 보조구장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하게 주경기장을 대관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이용자는 동일한 시설 규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남
- 3) 주경기장과 보조구장의 사용료를 동일하게 조정할 경우, 불가피한 주경기장 대관으로 인한 이용 포기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스크린파크골프장의 이용 요금 신설

- 1) 현행 조례에는 신규 체육시설인 스크린파크골프장의 이용 요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2) 체육시설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하므로, 요금 규정이 불명확할 경우 요금 징수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음
- 3) 신규 체육시설 도입 단계부터 이용요금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요금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요금 관련 민원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일부개정안)

6.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6. 1. 30.~2026. 2.20.(21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동의

9. 참고사항: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체육진흥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강 학
	팀장 직위·성명	체육지원팀장 김 승 국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박 기 현 (031-790-5551)

[별표 2]

전용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구분		사 용 료				비 고
				체 육 경 기		체육이외 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주경기장	육상장(트랙)	주간	30,000	40,000	400,000	600,000	. 기본 사용시간 2시간 . 야간 사용시 조명(라이트) 시설 사용료는 별도임	
	축구장	주간	일반	50,000				100,000
		만18세 이하	25,000	50,000				
축구장(면당) (인조잔디 경기장)		주간	일반	50,000	100,000	150,000		200,000
			만18세 이하	25,000	50,000			
실내 체육관		주간	150,000	200,000	250,000	300,000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 무대조명 사용시 별도임
인라인스케이트장		주간	60,000	80,000	-	-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 야간 사용시 조명(라이트) 시설 사용료는 별도임	
테니스장(면당)		주간	15,000	25,000	-	-	. 기본 사용시간 2시간 . 야간 사용시 조명(라이트) 시설 사용료 별도임	
농구장(면당)		주간	30,000	50,000	-	-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족구장(면당)		주간	30,000	50,000	-	-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수영장		주간	-	600,000	-	-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 전 레인 사용 기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10퍼센트는 별도임. ○ 축구장의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 체육시설의 전기사용료는 실제사용료를 부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용료 산출기초 : 실제사용료(전력사용량×kw단가)+부가가치세 10퍼센트 - 전기사용 kw당 단가는 한국전력공사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 주경기장의 육상장, 축구장을 모두 사용시 각각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육상장, 축구장 전용사용자가 다를 경우 경기.연습.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용사용을 허가함. ○ 기본사용시간에 관계없이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봄. ○ 관외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50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한다. ○ 수영장은 매월 2, 4째주 일요일 주간에 한하여 대관한다. 						

[별표 3]

이용료(제8조제1항 관련)

1. 주경기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준	이 용 료		비 고
			개인	단체	
주경기장	육상경기장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축구장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보조경기장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실내체육관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테니스장(면당)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선동 야구장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선동 축구장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감일 축구장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2. 수 영 장

(단위 : 원)

구 분	월 회 원(자유이용)			1일 회원(1회)			단 체		
	어 른	노 인 청소년	어린이 유 아	어 른	노 인 청소년	어린이 유 아	어 른	노 인 청소년	어린이 유 아
금 액	60,000	50,000	40,000	3,000	2,500	2,000	2,500	2,000	1,500
비 고	○ 월 자유이용은 주 6회 기준임 ○ 1일 회원의 경우 1일 2시간 기준임. ○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인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3. 헬스장, 에어로빅장(월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헬스장, 에어로빅	어 른	60,000
	노인·청소년·어린이	50,000

4.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사 용 료
인라인 스케이트장	1인 1일	이용구분 없음	1,000
	월 회원	이용구분 없음	10,000

5. 스크린파크골프장

(단위 : 원)

시설별	기 준	금 액	비 고
스크린 파크골프장	1타석당(최대 4명)	12,000원(1부)	1부당 2시간(10분 휴식) 기준

6. 강습프로그램 운영

(단위 : 원)

구 분	강 습 료
강습프로그램	○ 강습교실은 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금액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강습료를 조정할 수 있음

7. 이용료, 강습료의 할증 및 감액

1. 이용료 할증

- ① 1일 이용 시 토·공휴일은 25퍼센트까지 할증하여 징수할 수 있음.
- ② 관외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50퍼센트(수영장 200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한다.

2. 이용료 할인

- ①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이용 시에는 각 이용료 합계 금액의 20퍼센트까지 할인할 수 있음.
- ② 장기 등록 선납일 경우 할인 할 수 있음.
(3개월 납부 5퍼센트, 6개월 납부 10퍼센트, 12개월 납부 15퍼센트까지 할인)
- ③ 동호회, 클럽에 한해 1년 이상 장기 계약할 경우 30퍼센트 이내 강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테니스장에 한함)
- ④ 그린카드 사용 시 10퍼센트 할인 적용

3. 부가가치세 10퍼센트는 별도임.

4. 그 밖의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